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그간 한국부동산원에 포괄적으로 위탁되어 온 신고내용 조사업무 중 위탁을 통한 업무수행이 필요한 업무를 명확화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신고내용 조사권 위탁범위 명확화(안 제19조의4)

신고내용 조사업무 중 조사 대상자 선정, 보안요구 및 접수, 제출 자료의 적정성 확인 등만 위탁범위에 포함

####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clubj@korea.kr

- 연락처 : ☎ 044-201-3402, 3407, FAX 044-201-5534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2, 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9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신일에코텍(주)(주상대) ②우영환경개발(주)(주상현)

나. 전화번호 : ①02-453-2857 ②02-571-750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93호

3. 명칭 : 비탈면 및 하천호안에 셀룰로오스와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녹화토 취부기술 (SUPERGEL SYSTEM)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조경 / 사면녹화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천연토양과 식물조직상의 셀룰로오스 분말 및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침식방지제를 주재료로 한 생육보조재와 식생기반재를 네트화하는 기술로써, 이들과 액상고분자화합물을 철망이나 네트류의 보조재료없이 하천호안 및 경사도 60도 이내의 암비탈면에서 두께 7cm까지 내침식성과 수질안정성을 지닌 식생기반을 조성하는 기술

<범위>

천연토양과 셀룰로오스분말 및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하여 보조재료(PVC 코팅망, 천연섬유네트 등)없이 하천호안 및 경사도 60도 이내의 암비탈면에서 두께 7cm까지 식생기반을 조성하는 기술

5. 보호기간 : 2013.03.27. ~ 2021.03.26.(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 - 1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3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 1. 2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소재지	등록취소 사유
(주)브릿지캐피탈 (김동현, 김정국)	2010-230	2021.1.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5층 502호(역삼동)	舊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273호, 2016.5.29., 일부개정] 제43조제1항제5호

## ●병무청 공고 제2021-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68호 2020. 4.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병 무 청 장